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006 발의연월일: 2020. 12. 1.

발 의 자: 안호영·노웅래·송옥주

앙이원영 · 윤미향 · 윤준병

이규민 • 아수진॥ • 장철민

주철현 의원(10인)

제안이유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새로운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높은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피해"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 해를 의미하며,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 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위한 심의회 및 피해조사단과 불복 청구를 심 의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8조의3 신설).
- 다. 구제급여 신청·결정·심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 시보상금, 장례비로 정함(안 제48조의4 및 제48조의6 신설).
- 라. 구제급여 지급, 피해 평가 및 조사·연구를 위해 과징금, 과태료, 수수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함(안 제48조의9 신설).
- 마.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48조의11 신설).

법률 제 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을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로 한다. 제5장의2(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48조의2(살생물제품피해 구제) ① 환경부장관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배상받지 못하거나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원인자"라 한다)가 무자력인 경우

- 2.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 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4.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원인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원인 자에게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의회 등) ①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 · 연구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 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④ 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살생물제품피해구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법인·단체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심의회, 심사위원회 및 조사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4(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절차 등) ①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이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하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감정 등을 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한다),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이하 "구제급여 지급결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피해등급의 기준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렁으로 정한다.
- ⑥ 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⑧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⑨ 구제급여를 받는 대상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구제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한다.
-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및 심사의절차·방법,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의 변경) ① 구제급여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구제급여 대상자의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 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6(구제급여의 종류) 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진료비
 - 2. 장애일시보상금
 - 3. 사망일시보상금
 - 4. 장례비
 - ②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범위, 그 밖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7(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환경부장관 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

- 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 제48조의9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 2. 그 밖에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8(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8조의9(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 구 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 1. 구제급여의 지급
 - 2. 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3. 구제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 4. 살생물제품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 · 연구
- 5. 그 밖에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를 유지·개선하는 데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 1. 제3항에 따른 차입금
- 2. 제6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 3. 제38조에 따른 과징금
- 4.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 5. 제48조의11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피해구제분담금
- 6. 제52조에 따른 수수료
- 7.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 8.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 9.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 ③ 운영기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④ 운영기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 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⑤ 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8조의10(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 ① 운영기관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운영기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 ③ 운영기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 제48조의11(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유형 중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이경우 환경부장관은 분담금의 부과·징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별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르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담금 = 1인당 지원예상액 \times 피해자수 $\frac{(원인제품사용비율 <math>\times 2.5 + 원인제품판매비율 \times 1)}{3.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분담 능력이 없거나 중소기업 인 제조·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분담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⑦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7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심의회,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단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살생물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 제1조(목적) -----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 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 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 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 해의 구제-----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신 설> 제48조의2(살생물제품피해 구제) ① 환경부장관은 「제조물 책 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 으로 인하여 제20조제1항에 따 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 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배상받지 못 하거나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 유족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 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 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 1.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 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원 인자"라 한다)가 무자력인 경우
- 2.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 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4.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 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 거되지 않아 장래에도 피해 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원인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경우 해당 원인자에게 지급한

<u><신</u> 설>

<u>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할</u> 수 있다.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의회 등) ①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심 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환 경부장관 소속으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심사위원회(이하 "심 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살생물제품피해구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기

관·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 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 야 한다.

⑤ 심의회, 심사위원회 및 조사 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4(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절차 등) ①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이 제48조의 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하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 실, 살생물제품과 피해간의 인 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감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 구제급 여 지급 대상 여부 및 피해등 급 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 효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이하 "구제급여 지급결정" 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 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 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 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 제4항에 따른 피해등급의 기준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환경부렁으로 정 한다.
- ⑥ 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심

 의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에는 결정 결과를 통지 받은

<u>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u> <u>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u> <u>다.</u>

- ⑦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 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⑧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 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⑨ 구제급여를 받는 대상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이 제4항에 따 른 유효기간 중에 구제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한다.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및 심사의 절차·방법,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의 변경) ① 구제급여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구제급여 대상 자의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 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 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 경 등을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

<신 설>

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 과를 해당 구제급여 대상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6(구제급여의 종류) ① <u>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u> 와 같다.

- 1. 진료비
- 2. 장애일시보상금
- 3. 사망일시보상금
- <u>4. 장례비</u>
- ②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범 위, 그 밖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7(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환경 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

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 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 을 환수하여 제48조의9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에 납 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오
- 2. 그 밖에 구제급여를 잘못 지 급받은 경우
-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중 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에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제48조의8(손해배상 및 다른 구

 제와의 관계) 구제급여 대상자

 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

 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

<신 설>

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 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9(살생물제품피해 구제 계정)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 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 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 여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 1. 구제급여의 지급
- 2. 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3. 구제계정의 관리·운용에 필

 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

 한다)의 지출
- 4. 살생물제품피해의 평가 및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5. 그 밖에 살생물제품피해 구 제제도를 유지·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 1. 제3항에 따른 차입금
- 2. 제6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 3. 제38조에 따른 과징금
- 4.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구상 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 5. 제48조의11에 따른 살생물제 품피해구제피해구제분담금
- 6. 제52조에 따른 수수료
- 7.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 8.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 금
- 9.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 ③ 운영기관은 구제계정 운용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 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④운영기관은「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에도불구하고자발적으로기탁되는금품을살생물제품피해구제목적에부합

<신 설>

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
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제48조의10(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 ① 운영기관은 구제계 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한다.

② 운영기관은 해당 연도 구제 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 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 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구제계정의 여 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제48조의11(살생물제품피해구제 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살생 물제품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 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생물제 품유형 중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원료물질 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 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 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분담금의 부과·징수를 운영기 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 제조· 수입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르 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분담금 = 1인당 지원예상액 \times 피해자수 $\times \frac{(원인제품사용비율 \times 2.5 + 원인제품판매비율 \times 1)}{3.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은 분담 능력이 없거나 중 소기업인 제조·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수 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 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 관의 장은 분담금을 다른 회계 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분담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계정운 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 의 장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 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 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 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 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위탁) ① • ② (생 략) <신 설>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 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2. (생략) <신 설>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 한, 납부 절차, 이의신청, 그 밖 에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4, 제 48조의5, 제48조의7에 따른 살 생물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업 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 탁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심의회,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단원

<u>3.</u> (생 략)

<u>4.</u> (현행 제3호와 같음)